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1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문금주・이병진・주철현

박용갑 • 정진욱 • 박지원

김문수 · 서미화 · 박해철

이재관 • 안도걸 • 장종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재직 중 국방·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후 국방·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 원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제6항).

법률 제 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利敵)의 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서 지급받은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⑥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제5항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 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제6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행한 행위로 형사기소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④ (생 략)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
	<u>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u>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
	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
	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
	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서 지급받
	은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
	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
	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
	· 한다.
<u> </u>	 ⑥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제5항
	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
	사 기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 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